

7.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. 9. 19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9월 4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3. 9. 19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 연 수)

가. 개정이유

-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이 새로이 제정·공포시행(2003.1.1)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관계로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문의 “도시계획법”을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 개정(안 제1조)
-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했다(안 제3조)

다. 개정근거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정 성 수)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없 음

5. 討 論 要 旨 : 없 음

6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